



Caritas Internationalis

직원 윤리강령 & 행동강령

Code of Ethics

&

Code of Conduct for Staff

Rome, May 2014

Approved by the RepCo 18 May 2014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국제 카리타스 회원 기구를 위한 윤리강령¹

소개

국제 카리타스의 활동은 성경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을 통하여 규정되고 이를 지향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애정 어린 인격적인 만남²을 통하여 동기를 부여 받는다. “카리타스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회의 손길”³이며, 가난하고,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을 구현한다. 카리타스는 인간의 전인적 통합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재난과 분쟁과 불의로 야기되는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국제 카리타스 내규 1.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원 기구는 운영, 조직 기반, 재정의 자립과 책임, 최고 평의회와 결정한 행동 윤리 강령의 준수와 같은 최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회원 기구는 법률적, 재정적, 계약상 지위에서 자율성을 가진다.”

국제 카리타스는 그 교회법적 토대가 되는 정관과 내규뿐만 아니라,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과 지침들을 마련해 왔다.

- 카리타스 파트너십 핵심 가치 (2003)
- 국제 카리타스 아동 보호 정책 모형 Framework (2004)
- 국제 카리타스 군사적 관계에 관한 지침 (2006)
- 국제 카리타스 환경 정의에 관한 지침 (2006)
- 국제 카리타스 긴급 구호 지침 (2007)
- 국제 카리타스 운영 기준 (2014)

또한 국제 카리타스는 다음에 조인한 기구이다.

- 국제 적십자, 적신월 운동과 비정부기구를 위한 행동 강령
- 스피어 프로젝트의 인도주의 현장과 인도적 재난 대응의 최소 기준

더욱이, 국제 카리타스는 국제 인도주의 개발 공동체의 주요 네트워크로서 카리타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고 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좋은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¹ 국제 카리타스는 전 세계 200여개 나라와 영토에서 인도적 지원, 개발, 사회 서비스와 옹호 활동을 펼치는 가톨릭 사회복지 기구로서 165개 국가 카리타스 회원 기구들의 연합회이다.

²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커지고, 커지고,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남은 우리의 마음을 키워줍니다. 만나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 성 가예타노 축일 영상 메시지, 2013년 8월 7일) (<https://zenit.org/articles/pope-francis-message-for-the-feast-of-saint-cajetan/>)

³ 국제 카리타스 최고 평의회 회원들에게 전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의 담화(2013년 5월 17일)

이 윤리 강령은 위에 언급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와 원칙들을 규범적으로 요약 전술한 것이다. 또한 윤리 강령에는 모든 회원 기구와 직원들이 지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윤리적 틀이 담겨 있다. 국제 카리타스와 회원 기구와 그 직원들⁴은 모든 활동에서 이러한 가치와 원칙들을 구현하고자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연민을 적극적으로 증언한다.

국제 카리타스 운영 기준에는 회원 기구가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운영 기준은 이러한 윤리 강령이 조직적인 정책과 행동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직원을 위한 행동 강령”은 모든 카리타스 직원들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기술한 것이다.

국제 카리타스는 대부분의 회원 기구와 직원들이 대단히 양심적이고 진실되게 행동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전술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윤리 강령의 가치와 원칙들이 모범이 되고 있음을 확신한다. 이 문서는 모든 차원에서 국제 카리타스 회원 기구와 직원들에 대한 지도 규범이다. 그러나 이 윤리강령을 통하여 우리는 연합회 전체에 걸쳐, 무엇보다도 카리타스의 정체성과 교회적 사명에서 더욱 큰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카리타스 연합회의 회원 기구는 1) 서면으로 윤리 강령과 운영 원칙을 채택하거나, 2) 윤리 강령과 운영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각 기구에 맞게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교구 카리타스도 이러한 윤리강령을 채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제 카리타스 회원 기구를 대신하여 교구 또는 다른 파트너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동의 과정을 거쳐 이러한 최소 기준들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강령은 국가와 교구의 카리타스 인사 정책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직원은 강령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강령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가치와 원칙 :

모든 인간 생명은 임태에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신성하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빛어진 모든 여성과 남성은 고유한 존엄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만물에 앞서고 또 인간의 권리와 의무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⁵이다. “인간은 그 깊은 본성에서 사회적 존재이므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도 없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도 없다.”⁶ “모든 사회생활은 그 명백한 주인공인 인간의 표현이다.”⁷ “인간을 사회생활의 객체나 수동적 의미를 지닌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되고, 대신 인간은 그 자체로 주체, 기초, 목적으로 존재하고, 언제나 그렇게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⁸ “사회 질서는 날로 발전하며, 진리에 토대를 두고, 정의 위에 세워져 사랑으로 활력에 넘쳐야 한다. 또한 자유에서는 날로 더욱 인간적인 *humane* 균형을 잡아야 한다.”⁹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사회적 본성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가치와 원칙에 따라 살아갈 때 성취할 수 있는 사회의 도덕적 비전을 위한 토대이며 영감이다.

4 이 강령의 목적을 위해, “직원”은 이사회 회원, 고용된 직원, 자원봉사자, 감사, 모든 차원에서 연합회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현장『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26항

(http://www.vatican.va/archive/hist_councils/ii_vatican_council/documents/vat-ii_const_19651207_gaudium-et-spes_en.html)

6 사목현장 12항.

7 『간추린 사회교리』 106항

8 비오12세, 1944년 12월 24일 라디오 메시지, AAS 37(1945), 12

9 사목 현장 26항

가치

1. 정의Justice : 신앙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는 각자의 삶과 조직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느님의 전체 창조계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공정하고 도덕적인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 도움을 주면서, 가난과 소외로 내모는 원인에 항변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동반한다.

“단체나 개인들이 그들의 본성과 소명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을 실현할 때, 그 사회는 사회 정의를 보장한다. 사회 정의는 공동선과 공권력 행사와 관계된다.”¹⁰

2. 공동선The common good :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성장 가능성의 향유는 우리 사회를 조직화하는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경제적, 생태적, 법률적, 정치적) 방법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 친교 안에서, 다른 종교 전통, 정부, 폭넓은 시민 사회와 모든 권위자들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고,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언제나 모든 차원에서 인간에게 봉사하기를 바라고 또 이를 지향하는 사회는 공동선, 곧 모든 인간과 전인적인 선을 그 유품 목표로 삼는 사회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서 완성을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다른 인간과 “더불어” 다른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¹¹ 공동선은 언제나 인간의 발전을 지향한다. “사물의 안배는 인간 질서에 종속되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¹²

3. 통합적인 인간개발Integral Human Development : 우리는 가정과 더 넓은 공동체의 상황과 체험 안에서, 영적, 심리적, 감성적, 신체적, 물질적, 경제적인 측면을 아우르는 인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개발을 바라본다. 우리는 어디에서 활동하든지 간에 인류와 공동체 전체를 발전시키고,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구호, 재활, 개발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들 간의 강력하고 한결 같은 연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발전이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전체와 인류 전체의 발전 향상이 전체적인 것이라야 한다. 인간 역시 자신의 행동을 명령하고 그 행동의 가치를 판단하며 스스로의 성장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만 비로소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높으신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본성에 알맞도록 자유로이 본성의 능력과 요구를 받아 계발해야 할 것이다.”¹³

4. 연민Compassion : 단일한 인류 공동체와 일치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깊은 아픔을 느끼며, 인도주의 임무를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임무는 가톨릭 교회 기관으로서 그리고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리하여,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는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방해 받지 않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10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28항.

11 『간주린 사회교리』 165항

12 사목현장 26항

13 교황 바오로 6세,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4.34항

(http://w2.vatican.va/content/paul-vi/en/encyclicals/documents/hf_p-vi_enc_26031967_populorum.html)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원칙이며 예수님의 원칙인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사랑의 활동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보고 거기에 따라 알맞은 행동을 합니다.”¹⁴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¹⁵

5. 가난한 이들과 억압받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우선적인 선택 Preferential Option for and with the Poor and Oppressed

and Oppressed : 예수님의 복음에 근거하여,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한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애를 박탈하는 비인간적인 빈곤에 맞서 싸워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 억압받는 이들의 자유를 위하여 일하며, 이 땅이 주는 선물을 공평하게 나누고,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우리 자신처럼 여기며 그들의 편에 서야 한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 편에 서서 그들이 직면한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 주고 명에 줄을 끌려 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명예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혈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¹⁶

“빈곤에 맞서 싸우는 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의 우선적인 선택이나 사랑에서 그 강력한 동기를 찾습니다.”¹⁷ “가난한 사람을 ‘하나의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모든 이들 위한 새로운 미래, 더욱 인간다운 미래를 건설하는 주역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¹⁸

6. 존중 Respect :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옹호하는 종교 전통들과 문화, 구조, 관습을 존중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인간의 초월적 존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할 때에야 비로소 실현된다.”¹⁹

7. 연대 Solidarity :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연대하여 일하며, 그 열매로 평화와 정의, 인간 발전을 성취한다. 연대는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세상을 이룩하겠다는 공동 비전을 통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준다.

“연대성은 인간의 타고난 사회적 본성,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과 권리, 그리고 일치를 향한 개인과 민족의 공동 노선을 특별히 강조한다.”²⁰

¹⁴ 베네딕토 16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 31항 (http://w2.vatican.va/content/benedict-xvi/en/encyclicals/documents/hf_ben-xvi_enc_20051225_deus-caritas-est.html)

¹⁵ 마태 25,40.

¹⁶ 이사 58,6-7

¹⁷ 요한 바오로 2세, 라틴아메리카 3차 주교회의 총회 담화 참조, 푸에블로, 멕시코, (1979년 1월 28일), 1/8: AAS 71 (1979), 194-5

¹⁸ 요한 바오로 2세, 2000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14항, AAS 92(2000), 366면.

¹⁹ 『간추린 사회교리』, 132항

²⁰ 『간추린 사회교리』, 192항.

원칙 :

1. **파트너십**_{Partnership} :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공유된 가치와 전략, 정보에 기반하여 합의한 목표에 대한 장기적인 협력을 의미한다. 이는 서로에 대한 정직한 피드백, 공동 계획, 동반, 투명성, 책임과 다른 이들의 요구, 감정, 전문성, 경험, 지혜에 대한 진정한 개방성과 민감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상호 존중, 신뢰, 선의에 기반한다. 효과적인 파트너십은 회원 기구들과, 우리와 비전을 공유하는 다른 기구들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들 사이에서 연대를 만들어낸다.”²¹

“이러한 목적으로, 국제 카리타스는 회원들의 정당한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격려하고 조정하며 대변하고 역량을 키움으로써 회원들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²²

2. **보조성**_{Subsidiarity} : 우리는 권한, 결정, 책임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를 그 수준에 위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역의 역량과 자원을 극대화하고 강화할 수 있다. 카리타스 정체성의 중심은 국가, 교구, 본당의 카리타스에 있으며, 우리는 이들이 더욱 큰 자율성과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증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사회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확고부동한 사회 철학의 근본 원리이다. 따라서 한층 더 작은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위의 집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의이고 중대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모든 사회 활동은 본질적으로 사회 구성체의 성원을 돋는 것이므로 그 성원들을 파괴하거나 흡수해서는 안된다.”²³

3. **참여**_{Participation} : 우리는 우리가 섭기는 사람들이 사업의 계획, 운영, 실행에 참여하고, 초기 사정에서부터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참여는 인간 존엄성의 표현이며, 인류 공동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의미한다. 카리타스는 민주적이고 통합적인 사회의 토대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발 과정에 혼신적으로 참여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따라 공공 생활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선 실현에 공헌해야 할 권리가 나온다.”²⁴

4. **권한강화**_{Empowerment} : 우리는 사람들이 충만한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실현하며, 상호 존중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돋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통제하고 향상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시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회원 기구들과 함께 통합적인 인간 개발과 권한강화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저는 시끄러워지기를 바랍니다. ... 그러나 저는 각 교구 안에서도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가 밖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거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http://www.vatican.va/roman_curia/pontifical_councils/justpeace/documents/rc_pc_justpeace_doc_20060526_compendio-dott-soc_en.html)

²¹ 국제 카리타스, 카리타스 동반자 관계 원칙 : 성찰과 행동을 위한 국제 카리타스 핸드북
(2003년, 로마, <http://www.caritas.org/upload/par/partnership.qxd1.pdf>), p.14.

²² 국제 카리타스 정관 1.5

²³ 비오 11세, 회칙 『사십주년』(Quadrigesimo Anno), 79항

²⁴ 요한 23세, 회칙 『자상의 평화』(Pacem in Terris), 26항.

저는 우리가 세속적인 것, 편안하고 고착된 모든 것 ... 우리 자신 안에 우리를 가두는 모든 것에 대항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당도, 학교도, 기관도 모두 밖으로 나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²⁵

5. 독립성 Independence : 카리타스 회원 기구로서 우리는 운영의 우선순위와 프로그램을 결정하며, 국내외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특별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 그러하다.

“현대 세계의 긍정적인 표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 사이에서 갖는 연대 의식과 서로 돋는 노력과, 사회적 무대에서 행하는 공공연한 시위가 점증하는 점이다. 공공연한 시위는 폭력에 호소하지 않으면 서도, 국가 당국의 미비점이나 부패에 직면하여 자기들의 필요와 권리를 제시하는 방법이다.”²⁶

6. 관리와 책임 Stewardship and Accountability :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우리의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 전체에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따금 원조 수혜자가 원조 제공자에게 종속되고, 발전에 쓰여야 할 자금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비싼 관료주의를 유지하는 데에 쓰느라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제 단체들과 비정부 기구들은 그들 수입의 몇 퍼센트가 협력 계획에 할당되는지와, 그러한 계획들의 진행 내역, 마지막으로 단체의 상세 지출 내역을 기부자와 대중들에게 알려 주어 철저히 투명하게 활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²⁷

7. 모든 이들에 대한 평등, 보편성, 공정성, 개방성 Equality, universality, impartiality and openness to all peoples : 평등하게 창조된 모든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들은 참으로 인간다운 세상을 집단적으로 구현하며 이 세상에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공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활동에서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들의 동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공정하게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인종, 연령, 성별, 신체적 능력, 민족, 신조 또는 정치적인 신념과 무관하게, 참으로 어떠한 종류의 불리한 차별도 없이, 그들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그들의 요구에 따라 공정하게 봉사해야 한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천명하며 이를 수호해야 합니다. 남녀 모두 인간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비길 데 없이 특별한 존재입니다.”²⁸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가치와 자부심, 그 고유한 특성을 증진시키는 계획들을 통해 재능을 표출할 기회를 마련한다면, 각자의 특별한 개성을 혼동하거나 뒤섞지 않고 여성도 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한

²⁵ 프란치스코, 아르헨티나, 리우데자네이로, 젊은이들에게 하신 말씀, 2013년 7월 25일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speeches/2013/july/documents/papa-francesco_20130725_gmg-argentini-rio.html)

²⁶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39항.

(http://w2.vatican.va/content/john-paul-ii/en/encyclicals/documents/hf_jp-ii_enc_30121987_sollicitudo-rei-socialis.html)

²⁷ 『진리 안의 사랑』, 47항.

(http://w2.vatican.va/content/benedict-xvi/en/encyclicals/documents/hf_ben-xvi_enc_20090629_caritas-in-veritate.html)

²⁸ 베네딕토 16세,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가톨릭 운동들과의 만남, 양골라 루안다, 2009년 3월 22일, Insegnamenti V / I , 484면

(http://w2.vatican.va/content/benedict-xvi/en/speeches/2009/march/documents/hf_ben-xvi_spe_20090322_promozione-donna.html)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²⁹

8. 보호 Protection :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히,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각국의 법률, 카리타스의 아동 보호 정책 모형(2004) 및 기타 좋은 실천 사례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저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고통을 인정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보장과 그들이 발생시킨 혐의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직하고 투명한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같은 이유에서, 교회가 이러한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에 비추어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처럼, 예외 없이 다른 기관들도 동일한 기준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합니다.”³⁰

9. 지역 경제 Local economies : 우리는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현지의 자원과 생산물을 사용하고, 가능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지역 경제를 지원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공급을 고갈시키거나 예외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는 안된다.

“사회 하위 단체들에 대한 경제적 제도적 사법적 지원이라는 적극적 의미로 이해되는 보조성은, ... 그러한 기본 세포들의 활동과 자유와 책임은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³¹

10. 창조물에 대한 보호와 환경 영향에 대한 관심 Care for creation and attention to environmental impact :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올바른 관계를 증진함으로써 인간과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 인류는 지구와 지구의 모든 자원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창조물의 진정한 관리인으로서 행동하며, 우리 모든 활동의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미래 세대의 유산과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피조물을 가꾸고 보전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역사의 시초에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내리신 지침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계획에 속하는 것으로, 세상을 모든 이를 위한 동산, 모든 이가 살아가는 곳이 되도록 만들면서 이 세상을 책임감 있게 키워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³²

11. 조정 Coordination : 우리는 국가의 정부와 지방 당국, 교회, 다른 종교 단체, 시민 사회, 다른 구호 및 개발 단체들, 그리고 다른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조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 활동을 감독하고 지시하는 사도좌의 권고로 생겨난 국제 카리타스는 일반적으로 카리타스의 각국 지부인 자선 기구들의 연합회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부에 부여된 자율성을 전혀 제한하지 않으면서, 이 연합회는 교육, 조정, 대변의 활동을 통하여 협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³³

²⁹ 베네딕토 16세, 아프리카 주교 대의원 회의 후속 교황 권고, 『아프리카의 사명』 (2011), 57항.

(http://w2.vatican.va/content/benedict-xvi/en/apost_exhortations/documents/hf_ben-xvi_exh_20111119_africæ-munus.html)

³⁰ 베네딕토 16세, 미국 주교단의 사도좌 정기 방문(Ad Limina) 중에 하신 연설, 2011

(http://w2.vatican.va/content/benedict-xvi/en/speeches/2011/november/documents/hf_ben-xvi_spe_20111126_bishops-usa.html)

³¹ 『긴급린 사회교리』, 186항

³² 프란치스코, 2013년 6월 5일 일반 알현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audiences/2013/documents/papa-francesco_20130605_udienza-generale.html)

³³ 요한 바오로 2세, 칙서 최후의 만찬, 국제 카리타스에 교회법상 공법인격 부여, 2004년 9월 16일.

(http://w2.vatican.va/content/john-paul-ii/en/letters/2004/documents/hf_jp-ii_let_20040916_caritas-internationalis.html)

12. 옹호 Advocacy :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대신하여, 그들과 함께,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빈곤과 불의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이를 증언하기 위하여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옹호활동을 수행한다.

“저는 또한 국제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분들이 축적한 체험은 여러분이 건실한 인류관을 지닌 국제 공동체 안에서 변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가르침에서 양식을 얻고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데 헌신하는 변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여러분의 삶과 활동의 증거는 여전히 중요하며, 온전한 인간 선의의 진보에 공헌하는 것입니다.”³⁴

13. 배움과 직원 계발 Learning and Staff Development :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성찰과 역량 강화, 관찰과 평가, 지식 관리와 전략적 기획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활동을 증진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직원들이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 경험, 양성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 내고 카리타스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교구, 국가, 국제 차원의) 카리타스 기구를 비롯한 교회의 사회 복지 기구들은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자원과 무엇보다도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려면 우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협력자들은 올바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성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돌보는 임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역량이 일차적인 근본 요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대하고 있으며, 인간에게는 언제나 적절한 전문적인 도움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인간애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³⁵

14. 직원 보호 Staff Care : 우리는 모든 직원들이 공정하고 품위 있고 지속 가능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인적 자원 관리에서 좋은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해당 사법권 내의 고용법을 준수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완수한다.

“노동자의 권리는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과 탁월한 인간 존엄에 바탕을 둔다.”³⁶

+ Dr. Oscar Andrés Rodríguez S.B.

Card. Oscar Andrés Rodríguez Maradiaga
President
Caritas Internationalis

 + Lucas W. Choi,
Bishop Lucas Kim

Michel Roy
Secretary General
Caritas Internationalis
President
Caritas Korea

2014년 5월 18일 국제 카리타스 최고 평의회 승인.

34 베네딕토 16세, 국제 카리타스 총회 참가자들에게 하신 연설, 2011년 5월 27일

35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1항.

36 『간추린 사회교리』, 301항.

(http://www.vatican.va/roman_curia/pontifical_councils/justpeace/documents/rc_pc_justpeace_doc_20060526_compendio-dott-soc_en.html)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국제 카리타스 회원 기구의 직원을 위한 행동 강령

이 행동 강령은 카리타스의 모든 직원³⁷이 지켜야 하는 태도와 행동을 명시한다. 행동 강령은 카리타스 기구들의 근본 가치와 조직적 실천 사항들을 규정한 카리타스 윤리 강령에서 비롯되었고, 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고통 받는 사람들을 섬기려면 우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협력자들은 올바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성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돌보는 임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역량이 일차적인 근본 요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대하고 있으며, 인간에게는 언제나 적절한 전문적 도움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인간애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³⁸

강령은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4개의 핵심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모든 카리타스 직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가치와 행동과 윤리

- 사회적 도덕적 가치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준수하며, 최소한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행동이 언제나 최고 수준이어야 하며, 그렇게 인정받아야 한다.
-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굳건한 신앙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한다.
- 모든 인간 권리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추행, 학대, 무시, 착취를 거부한다.
- “교회의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에 대한 가장 훌륭한 증언”³⁹이다.
-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발언이나 다른 모욕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
- 다른 이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타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을 양심의 범위 안에서 준수하여야 한다.
- 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 모든 직원과 그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보건, 안전, 보안 지침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카리타스의 명성이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³⁷ 이 행동 강령이 말하는 “직원”은 이사회 구성원, 고용된 직원, 자원봉사자, 자문 위원들이다.

³⁸ 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 2015.12.15., 31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제1판 16쇄)

³⁹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1항.

- 카리타스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알게 된 정보나 지식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어떠한 형태의 편견이나 차별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사랑으로 훌륭하게 수행하며, 카리타스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유지한다.
-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실천할 때에 언제나 그 지역의 민감한 사안들에 유의하여야 한다.
- 다른 카리타스 기구의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연대를 이루며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

2. 이해 갈등과 강압과 부패

- 경제적, 직업적, 정치적, 성적으로 개인적 이익이나 편의를 얻으려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카리타스 직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부여된 권한 지위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 카리타스 활동과 관련된 사안에서 재정, 개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잠재적 또는 실제적 이해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퍼바이저나 다른 상급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수혜자나 동반자 또는 계약자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편의나 뇌물을 받거나 다른 형태의 개인적 이득을⁴⁰ 얻어서는 안 된다.

3. 카리타스 재산의 보호와 관리

- 카리타스의 자산과 지적 재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절도나 사기 또는 다른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재정 책임의 정직성과 청렴성을 적합한 기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 개인행동

- 카리타스 사업체 또는 숙소, 사무실, 차량 등을 포함하여 소유 또는 임대한 부동산에서 어떠한 종류의 무기도 휴대해서는 안된다.
- 위락 약물을 사용하거나 지나친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 성적인 행위는 언제나 그 사회의 문화의 전문적 윤리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⁴⁰ 국가적 지역적 전통과 관습적인 환대 방식을 존중하기 위하여 카리타스를 대신하여 작은 표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보고되어야 한다.

행동 강령의 실행

의장이나 국장은 모든 직원이 행동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게 해야 하며, 이 행동 강령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국제 카리타스 행동 강령의 채택이나 적용은 국제 카리타스 내규 제1조 3항에 규정되어 있고, 국제 카리타스 운영 기준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항의 절차

외적인 항의 절차는 국제 카리타스 운영 기준 제1조 7항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이는 특히 수혜자, 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동반자 직원들이 항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의무

모든 직원은 이 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어떠한 우려나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직원은 그 수퍼바이저에게 우려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최대한 상세한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 (예 : 관리자가 연루된 경우) 이러한 절차가 가능하지 않다면, 더 높은 관리자, 이사회 구성원이나 다른 적절한 권위자에게 알려야 한다.

모든 폭로는 기밀로 다루어질 것이다. 직원이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 중대한 비행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 사람은 누구나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것이다. 고의로 거짓 혐의를 제기하는 것은 중대한 규율 위반 행위로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강령의 위반

행동 강령에 대한 모든 위반 행위는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 가로수회

김운희 주교
한국 카리타스 이사장

2014년 5월 18일, 국제 카리타스 최고 평의회 승인